

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 공시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, 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■ 개정 사유

임원의 선임 관련 조항의 문구를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였음.

	지배구조 내부규범
변경 전	<p>제24조(임원의 선임)</p> <p>① 정관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는 임원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책임자 중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라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, 재무·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,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업무 등을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한다.</p> <p>④ 정관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임원의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이내, 연임 시 1년 이내로 하되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⑤ 임원의 연임기준은 신규 선임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적용한다.</p>

변경 후

제24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사규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임원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, 임기, 연임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
- ② 대표이사는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,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결의로 임명한다.
-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.